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KOLAS-SR-006]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전자기 적합성시험기관</u> <u>추가기술요건</u></p> <p>9.1 시험기관 <u>과/또는</u> 고객이나 쌍 방에 의해 합의된 EMC 시험계 획(2.2참조)에 따라 EMC 시험 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은 장려 되는 관례이다.</p> <p>10.1 EMC시험에서 인정범위를 규 정하는 <u>문서는 공인기관인정제</u> <u>도운영요령</u> 제 14조에 따라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제2조(폐지고시) 이 기준의 시행과</u></p>	<p><u>전자기적합성 시험기관</u> <u>추가기술요건</u></p> <p>9.1----- <u>또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0.1----- ----- <u>문서는 「KOLAS 공인</u> <u>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</u> <u>영요령」 (KOLAS-R-002) -----</u> -----.</p> <p><u>14. 재검토기한</u> <u>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</u> <u>관한 규정」 (대통령 훈령 제394호)</u> <u>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</u> <u>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</u> <u>여 이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</u> <u>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09월 14</u> <u>일까지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종전의</u></p>

동시에 종전의 전자기 적합성시험 기관 추가 인정기준(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-310 : 2008. 6. 20)은 폐지하며,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속서 A
용어해설

야외시험장(open area test site) CI SPR 16이나 다른 표준에 명기된 바와 같은 EUT로부터 나온 전자기방사를 측정하는 장소

「전자기 적합성시험기관 추가기술요건」(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2-0066호, 2012. 2. 17)에 의한 공인기관 인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추가기술요건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속서 A
용어해설

야외시험장

